



<b>보도자료</b>	 <b>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b>	
	담당자	간사 김성원 (☎ 3480-1296)
	공보관실 ☎ 3480-1451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2012. 5. 17. (목) 10:00 개최

### 1.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 1) 회의 개최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는 2012. 5. 17. 10:00 대법원 602호 회의실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

#### 2) 회의 개최 경과

- 2011. 11. 29.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관의 SNS 사용기준을 마련하기로 심의 의결(별지 1)
- 2000. 8.경 창립되어 현재 348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판사로 이루어진 자발적 연구회 모임인 사법정보화연구회는 2011.경부터 SNS의 진화와 집단지성, SNS와 법관윤리 등을



주제로 한 논의를 진행하여 오던 중 2012. 2. 10. ‘법원, 법관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라는 주제로 공개토론회 개최하고, 2012. 4. 6. 연구 결과로 「법관의 SNS 사용에 관한 연구」 책자를 공개함

- ▣ 2012. 4. 13. 법원 내부 전산망에 관련 자료를 게시하고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
- ▣ 2012. 4. 27. 권고의견 TFT 회의 개최

## 2. 권고의견 제7호 의결

### 1) 권고의견의 의결

- ▣ 위 회의에서는 권고의견 제7호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심의가 진행된 결과 위원 전원 의견이 일치되어 권고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결함(별지 2)

### 2) 권고의견의 내용

- ▣ 법관은 SNS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사용법을 숙지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 법관은 SNS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함
- ▣ 법관은 SNS 상에서 소송관계인이 될 수 있는 사람과 교류할 때에는 법관으로서의 공정성에 의심을 일으킬 외관을 만들어서는 아니 됨
- ▣ 법관은 SNS 상에서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제한됨



- ▣ 법관은 SNS 상에서 사회적·정치적 쟁점에 대하여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에도 자기절제와 균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법관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거나 향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함

### 3) 권고의견의 의미

- ▣ 법관의 SNS 상에서의 의견표명 등에 대하여 사회적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사법신뢰 제고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였음
-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 11인 중 7인이 외부인사로 구성되어 법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법원 외부의 시각을 충분히 반영하였음

## 3. 참고사항

- ▣ 권고의견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에 근거하여 법관윤리강령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임
- ▣ 추상적·보편적 특성을 가진 법관윤리강령을 구체화하여 법관에 게 좀 더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것임
- ▣ 전례
  - 권고의견 제1호 “법관이 외부인사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2006.)



- 
- 권고의견 제2호 “법관의 정치자금 기부와 관련하여”(2007.)
  - 권고의견 제3호 “법관의 구체적 사건에 관한 법관의 공개적 논평이나 의견표명시 유의할 사항”(2009.)
  - 권고의견 제4호 “법관이 퇴직 후 법무법인 등에 취업할 때 유의할 사항”(2009.)
  - 권고의견 제5호 “법관이 단체 활동을 할 때 유의할 사항”(2010.)
  - 권고의견 제6호 “법관이 법정 언행 및 태도에서 유의할 사항”(2011.)
-



## 〈별지 1〉

### 대법원장 부의안건에 대한 심의 의견

법관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요구된다. 또한 정의는 행해져야 할 뿐 아니라 명백히 행하여지는 것으로 외부에 보여야 하고, 법관의 개인적인 행동과 모습은 국민의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법관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의견 표명을 함에 있어 자기절제와 균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법관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거나 향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시킬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하여야 한다.

이에 위원회는 법관들에게 페이스북 등 SNS 사용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보다 분별력 있고 신중한 자세를 견지할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법관의 페이스북 등 SNS 사용 기준에 관하여는 이를 만들 필요가 있음을 공감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그 기준을 마련하기로 한다.

2011. 11. 29.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 〈별지 2〉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7호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라 합니다)는 신속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인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SNS 상의 의사소통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게시된 정보가 사용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널리 전파되어 계속 존속할 수 있으므로 공개적 성격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SNS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윤리강령의 취지에 맞추어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에 관한 권고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법관은 SNS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사용법을 숙지함으로써 SNS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관은 자신의 SNS 상에서 신상정보와 게시물의 공개범위 설정 및 타인이 자신의 SNS 상에 남긴 게시물 관리에 신중해야 합니다.

둘째, 법관은 SNS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여 품위를 유지하고, 법관으로서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편견이나 차별을 드러내거나 그러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셋째, 법관은 SNS 상에서 변호사 등 소송관계인이 될 수 있는 사람과 교류할 때에는 법관으로서의 공정성에 의심을 일으킬 외관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법관으로서의 공정성에 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의 교류를 중



---

단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넷째, SNS의 공개적 성격으로 인하여, 법관은 SNS 상에서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제한되고(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3호 "구체적 사건에 관한 법관의 공개적 논평이나 의견표명시 유의할 사항" 참조),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타인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법조인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해서도 안 됩니다.

다섯째, 법관은 SNS 상에서 사회적·정치적 쟁점에 대하여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에도 자기절제와 균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법관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거나 향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합니다.

2012. 5. 17.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